

영농상속공제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1. 피상속인 및 신고인(상속인) 인적사항

|      |    |  |        |  |
|------|----|--|--------|--|
| 피상속인 | 성명 |  | 주민등록번호 |  |
| 상속인  | 성명 |  | 주민등록번호 |  |

2. 영농상속재산명세

가-1.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

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|
| 종류(코드) | 소 재 지 | 수량 (면적, 톤수) | 단가   | 가액 |
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|
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|
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|
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① 합계 |    |

가-2.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

|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|
|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|
| 상호 | 사업자등록번호 | 주식수 등 | 1주당 가액 등 | 가액 |
|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|
|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|
|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|
|    |         |       | ② 합계     |    |

3. 영농상속공제액

가-1.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(①)

가-2.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(③ × ⑦)

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(=②)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           | ④ 총자산가액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무관 자산 가액           | ㉗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 해당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㉙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㉚ 과다보유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㉛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·채권 및 금융상품(㉚에 해당하는 가액 제외)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⑤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( ㉗+㉘+㉙+㉚+㉛)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( ④ - ⑤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( ⑥ ÷ ④)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가-3.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[⑧ = ① + ( ③ × ⑦ )]

가-4. 영농상속공제 한도액(⑨)

30억원

가-5. 영농상속공제액(⑩ = ⑧ 과 ⑨ 중 적은 금액)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상속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  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신고인 제출서류   | 1. 영농사실 증명서류 1부<br>2. 「어선법」 제1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국적증서,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<br>3. 「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면허증 사본 1부<br>4. 「수산업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사본 1부<br>5. 「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사본 1부<br>6. 영농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8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<br>7.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<br>8.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<br>9. 그 밖에 영농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 수수료 없음 |
|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| 1. 농지·초지·산림지·염전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<br>2. 참고·저장고·작업장·퇴비사·축사·양어장 등 건축물 및 이에 딸린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증명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
## 작성방법

1. "2. 영농상속재산명세" :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적습니다.

가-1.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

- 1)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
- 2) 「초지법」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
- 3) 「산지관리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(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「산림법」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)에 따라 새로 조립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(보안림·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)
- 4) 「어선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
- 5) 「내수면어업법」 제7조, 「수산업법」 제7조에 따른 어업권(「수산업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)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에 따른 양식어업권(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)
- 6) 농업·임업·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·저장고·작업장·퇴비사·축사·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(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「건축법」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)
- 7) 「소금산업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

가-2.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

- 1)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(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계산방법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5항제2호\*를 준용)

\* 주식가액 등의 가액 × (총자산가액 - 사업무관자산가액) / 총자산가액

2.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상속재산의 종류(코드)는 아래와 같습니다.

| ①  | ②  | ③   | ④  | ⑤           | ⑥    | ⑦  |
|----|----|-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|
| 농지 | 초지 | 산림지 | 어선 | 어업권 및 양식어업권 | 창고 등 | 염전 |

3. "① 합계"란은 "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" 재산가액의 합계를 적고, "② 합계"란은 "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" 재산가액의 합계를 적습니다.

4. "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"란은 "② 합계"를 적습니다.

5. "④ 총자산가액"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.

6.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㉠ ~ ㉡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.

㉠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 해당자산 : 주택(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)·별장·비사업용 토지 등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

㉡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: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(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)

㉢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: 대여금(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)

㉣ 과다보유현금 [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(요구불예금 및 취급일부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)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]

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, 채권 및 금융상품(㉡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)

7. "⑥ 사업관련 자산가액"란은 "④ 총자산가액"에서 "⑤ 사업무관자산가액의 계"를 뺀 가액을 적습니다.

8. "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"란은 "① 합계"와, "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"에 "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"을 곱한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

9. "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"은 30억원입니다.

10. "⑩ 영농상속공제액"란은 "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"과 "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"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.